

의안번호	2215004
의 퇴 인	구자근의원
회 답 일	2025.12.29.
추계번호	25D676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결정기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는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시켜, 現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2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음(제2호)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국가유공자)로 전환될 경우, 현시점에서 그 상이등급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
2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2025.11. 기준 245명)를 대상으로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는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 질병의 질병기준, 등급체계 및 판정절차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음

[표 1]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기준 등

구분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질병기준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 의학적·과학적 상관성이 규명된 질병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 의학적·과학적 상관성 규명이 안 된 질병이며,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질병	
등급체계	상이등급	상이 1~7급(11개등급)	장애등급	고도/중등도/경도
등급판정	신체검사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정		신체검사 → 지방청장이 판정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로 전환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인원: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소계
2020	12,199	7,327	31,906	51,432
2021	11,752	7,690	31,489	50,931
2022	11,242	7,926	30,916	50,084
2023	10,830	8,141	30,389	49,360
2024	10,044	8,261	29,431	47,736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개인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은 3단계(고도/중등도/경도)이며,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은 11단계로, 최소 17개에 이르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참고자료】 을 국가유공자의 11개 등급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질병별 등급 전환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
-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질병별 등급 전환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정보가 없어,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전환될 상이등급별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 인원을 예측할 수 없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참고로, 2024년 당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중 4개 질병(갑상샘기능저하증/다발성경화증/방광암/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이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총 2,073명(본인 1,189명, 유족 884명)이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음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

참고자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별 인원 (2025.11.기준)

(단위: 명)

구분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경도	129	330	1,368	714	735
중등도	24	191	74	63	63
고도	—	2	1	—	—
소계	153	523	1,443	777	798
구분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경색증
경도	1,434	665	21	25	3,037
중등도	344	89	12	9	752
고도	144	17	17	3	362
소계	1,922	771	50	37	4,151
구분	뇌출혈	악성종양	간질환(BC간염제외)	고혈압	동맥경화증
경도	402	3,346	1,077	11,258	839
중등도	238	4,509	101	351	219
고도	176	7,693	27	443	11
소계	816	15,548	1,205	12,052	1,069
구분	고지혈증	무혈성괴사증	종합판정	합계	
경도	364	277	2,519	28,540	
중등도	9	308	922	8,278	
고도	—	45	473	9,414	
소계	373	630	3,914	46,232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